

사랑의 자료

NSL.1.37
37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출판탄압공동대책위원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구속방북인사후원협의회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

한국어	영어	자료실
등록		번호

들어가면서

바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토론회 포스터에 들어갈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라는 내용의 사진 식자를 찍기 위해 생면부지의 인쇄기획실을 찾게되었습니다. 자주 운동권의 유인물과 포스터를 찍어주는 기획실도 있었으나 그 기획실들에 없는 글씨체를 찍기 위해 비운동권 기획실(?)을 찾게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기획실에는 식자치는 젊은이와 단골손님인듯한 중년의 아저씨와 경리 아가씨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져간 원고를 식자치는 젊은이에게 꺼내 보여주자 반기던 청년의 얼굴 빛이 순간 심각해지면서 대뜸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군요. 누구한테 소개받고 오셨어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구동성으로 “내용이 뭐 어때서요?”했으나 뭐 당장 어떻

게 되는 것이 아닌데도 가슴이 뜨끔해서 앉아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무 대답도 않고 골똘히 원고 내용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아저씨가 다가와 “뭐 무슨 내용인데?”하면서 원고를 가져가 수상쩍다는 듯이 눈여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머릿 속에서는 “국보법 철폐 운운하는 자는 빨갱이닷!”하며 거리마다 나붙었던 극우단체의 현수막이 오락가락하는 동시에 대체 저 중년의 남자는 뭘하는 작잘까? 우리가 너무 경솔했나? 하는 생각들이 오갔으며 틀렸구나 싶어 원고를 찾아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중년의 양반이

“별로 안좋을 것도 없는데 뭘그래? 벌써 전부터 문제가 된거잖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얼굴 빛이 좀 펴지면서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걸 처음 썩어보니까 이상해서 그러죠뭐”했는데 그 중년의 아저씨는 한술 더떠서 “아이구 어떤건 나면서부터 쳤나? 급하신 것 같은데 빨리 쳐드리라구 어여”하고 독촉까지 해주었습니다. 곧이어 청년은 시원스레 “그럼시다.”하고 기계 앞에 앉았고 저희들은 기다리는 동안 경리 아가씨로부터 따뜻한 차까지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종종 오세요”하는 인사를 받으며 나선 저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일반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야 했습니다.

그동안 분단과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보법을 이용해온 역대정권에 대한 불신에다, 최근 드높아진 조국통일의 기운이 낳은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각계각층 민중들의 눈물어린 투쟁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범민족대회』기간 중에 민가협에서 벌인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서는 단 2시간만에 무려 3000여 시민이 참여했다하니 정권과 극우단체들의 악선전이 무색할 지경으로 국보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토록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최근 소련과의 수교를 정치외교적 성과라 자랑해마지 않았으며 현재 남북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등에 목줄을 걸고 스스로 국보법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노태우정권은 그러나 여전히 국보법을 빌미로 각계각층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민족민주 투사들을 잡아넣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외의 압력을 피하고 스스로 북방정책의 명분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른바 국보법 개정안을 내세워 기만적인 손질을 기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대체법안 또한 국가보안법의 악폐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에는 턱도 없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만이 그간 국보법으로 인해 뿌려진 민중의 피눈물을 보상하고 그 악폐를 근절하며

이 땅에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에서 공동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우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토론회를 준비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미흡하나마 국보법이 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을 향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올가미를 드리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일 처음에는 국보법이 왜 생겼고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국보법의 변천사”로서 김선수 변호사님이 쓴 초안에 박원순 변호사님의 글을 약간 첨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는 장기수, 통일인사, 노동운동, 출판운동, 대학 언론 등 그간 국보법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아온 각 부문의 피해 현황과 사례, 발제문을 실었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김선수 변호사님이 쓴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대체법안의 기만성을 분석한 총괄발제문이 실려 있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집을 그저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시거나 전체를 요약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조정하시어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단체나 주변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토론회를 조직하시고 작은 실천이라도 모색하는데 요긴하게 써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절실한 열망을 조직할 수 있다면 국보법 완전 철폐의 그날은 하루, 한시라도 앞당겨지리라 확신하면서...

1990년 10월 19일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 구속방북인사 후원사업협의회
출판탄압공동대책위원회 /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변천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은 이 땅에 분단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 10호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다. 이는 국가의 형사 기본 법인 형법이 제정되기 무려 5년전의 일이었으며 여수, 순천 사건의 진압 이후 남로당 지하세력의 파괴를 명분으로 한 것이었다. 이른바 여순 군반란 사건의 발단은 48년 5.10 단독정부 수립을 결사 반대한 제주 민중의 4.3항쟁에 대한 진압 명령 거부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의 주요 주장은 바로 단독정부 수립 반대에 있었으니 이들과 다수의 애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생겨난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조국 분단”과 함께 탄생되었다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단독정부 수립에 동조하는 국회 내에서 조차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과의 동일성과 인권탄압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은 포악무도한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 제국주의의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이 마당에... 제국주의의 잔재 폐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인식 의원 발언

「풍파에 쓰러져가는 집을 고치기 위해 말하는 의원에 대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협박장이 돌고 있는 이때에도 애국심으로 정부를 개조하라 또는 무엇을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국가적이며 이적행위이니 하고 떠드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3일이 못되어 후회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김중기 의원 발언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주도했던 자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과도적 법안으로서 국가보안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꺼냈다. 이들은 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공산당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라 매도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봉쇄한 위에 졸속적으로 동법을 통과시켰다. 제정 당시의 국보법은 전문 6조로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 (1조) ‘살인, 방화, 주요시설 등 파괴목적의 결사집단을 조직하는 행위’ (2조) ‘이상의 행위에 대한 방조’ (4조)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 유

형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법정 최고형은 무기형에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도적인 법으로 일단 자리를 굳힌 국보법은 49년 12월 사형을 신설하고 1회의 재판만을 허용하는 단심제를 도입하는 등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최초로 제정된 국보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사상 탄압법”인 동시에 이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분단상태를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뛰어넘으려는 논리나 실천을 처벌하는 “분단 고착화”법으로서 그 기본골격이 오늘날의 국보법으로 이어지는 현행 국보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1949년 국보법 제정에 반대했던 의원들 다수가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한해동안 무려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으며 118,621명이 검거, 투옥되고 8-9천여명의 군인이 구속되거나 숙청되었다.

2) 자유당 시절의 국보법 개정

6.25전쟁이 끝나고 이남의 좌익세력은 거의 진압되었고 따라서 국보법 제정 당시의 위기적 상황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는커녕 더욱 강화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온갖 부정선거를 다 동원하고서도 진보당 당수 조봉암선생에게 유효투표의 30%를 내

주는 간담 서늘한 일을 당하자 58년 1월 평화통일 강령을 빌미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 7명을 구속하고 이중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고 말았다.

이승만 정권은 비등하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60년 정·부통령 선거의 길을 닦기위해 국보법의 강화개정에 착수하였던 바 그들의 기도는 이른바 2·4파동, 보안법파동이라 불리는 국회 내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자유당은 59년 12월 19일 야당의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에 자유당의원만의 만장일치로 국보법 개정안을 3분만에 날치기 통과시켰고(법사위), 곧장 야당의원들의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농성이 시작되었다.

24일 농성 닷새째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위권이 발동된 가운데 300여 무술경관들이 국회에 난입, 농성 중이던 야당의원들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끌어냄으로써 의회정치가 타살당하고 국민주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자유당 의원들의 결의만으로 국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오로지 정권욕을 위해 강화, 개정된 국보법의 주요 내용은 그 대상이 언론, 야당, 일반국민에게 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기밀’과 ‘적’의 개념 규정이 새로 삽입되었고 종래의 죄목에다 국가기밀 탐지, 정보수집, 편의제공,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신설되었는가하면 경찰조사의 증거 능력 인정(즉 고문의 합법화), 구속 기간

의 연장과 간신(무한정한 고문과 격리) 등을 첨가한 것이었다.

이 개정 내용 또한 현행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 들로 전수되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해 국가기밀은 정치, 군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적에게 전달된 경우가 아니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또 사실과 틀린 내용일지라도, 또한 이미 전사회적으로 공포된 내용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3) 4.19 당시의 2대 악법 투쟁

스스로 묘혈을 판 자유당정권은 노도와 같은 4.19항쟁 속에 무너졌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민주당 정권은 국보법에 대한 격렬했던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정보수집죄(12조), 인심혹란죄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국보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에 의해 개정된 국보법에는 여전히 이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치 않고 불법지역왕래죄(6조) 등 반통일적 성격이 유지되었으며 나아가 밀고를 조장하는 불고지죄(9조), 선전, 선동죄 등이 신설되었고 증인의 구인, 유치 및 구속기간에 대한 특별규정 등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존치되었다.

4.19혁명이 일어나자 자유당 치하에서 숨죽였던 노동자, 농민, 학생, 언론인, 교사 등 각계각층 민중들의 진보적 투쟁이 터져나왔고 진보적 정치세력들 역시 정치일선에 나서 혁신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이복과의 교류를 전제로한 통일운동이 봇물터진 듯 일

게된다.

근본적으로 무능력하고 보수, 반공, 우익정당으로서 성격을 갖는 민주당정권은 진보세력과 학생들의 혁신운동, 통일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반공임시특례법을 제정하거나 국보법을 보강하여 개정하려 시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2대악법투쟁이 불붙어 결국 민주당정권의 악법 제정, 개정의도는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인 61년, 5.16쿠데타가 기습적으로 감행되어 민주당정권이 의도했던 악법의 제정, 개정을 고스란히 확대, 전승했던 것이다.

4) 박정희군부독재의 반공법 제정과 국보법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이하 정치군인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군인들만으로 구성된 쿠데타기관인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61년 7월 반공법(법률 제 643호)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그간 악명 높았던 국보법 보다 그 처벌범위나 대상, 형량 등이 훨씬 확대, 강화된 희대의 악법이었다.

반공법에는 이복과 이에 관련된 국내의 단체 뿐만아니라 공산계열 전체가 처벌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적으

로 규정되게 되었고 직접 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고무, 찬양, 동조 행위'가 처벌받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 수수를 위한 또는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위한 왕래, 잠입'만 처벌되던 것이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으로 탈출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 자체가 처벌받게 되어 이북과의 모든 교류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반공법이 탄생함에 따라 국보법의 존재의의는 상실되었으나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은 국보법과 반공법을 병행하여 민중운동탄압에 최대의 효과를 보려하였으며, 62년에는 반국가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국보법 위반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물샐 틈 없는 정권안보의 벽을 쌓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는 반공법과 국보법이 2대 안보형사법으로 기능하였고 특히 반공법이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국보법이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반공법은 의견 상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도 곧바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양대 악법에 의해 60년대는 물론 유신독재 아래 통혁, 인혁, 동백림, 민청학련 사건 등 끝없이 이적단체 사건이 양산되었다.

5) 5공화국 시절의 국가보안법

역사적 필연에 따라 유신정권이 몰락한 이후 전국에서 움터오는 민주의 봄을 짓이기며 12. 12. 5. 17쿠데타와 광주에서의 피의 진압을 통해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이하 군부 내 강경세력은 이른바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쿠데타 입법기구를 만들어 여기에서 5공화국 강권통치의 골격이 되는 악법들을 제정 혹은 개악하였다.

계엄아래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이하 군사독재정권은 총칼 이외에는 아무런 정통성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정통성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철저한 물리적 통제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보법의 전면개악이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80년 12월 반공법을 흡수통합하여 국가보안법을 전면개정하고(법률 제 3318호) 그에 따라 반공법을 폐지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이 반공법을 폐지한 진정한 의도는 반공법이 그 적용과정에서의 엄청난 인권침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으며 "반공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을 가진 세계 유일의 나라 한국"이라는 호칭이 불을 정도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알량하게도 인권탄압법인 반공법을 폐지했다고 국내외에 선전하는 효과를 노렸으며 대대적인 정화를 겪은 제도언론이 그 뜻을 충실히 반들어 "진취적 현실 인식"이라 찬양해 마지 않았다.

그러나 존속, 개정된 국보법으로 반공법의 온갖 독소조항들이 흡수되었으며 형량은 오히려 높아지고 처벌범위 또한 확대되었으니 바야흐로 5공화국은 유례없는 인권탄압, 정권유지의 도구를 확보하였다 것이다.

아다시피 5공화국은 가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 불리울 만큼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었고 고문 수사, 의문사가 상식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5공화국의 물적을 불려온 87년 6월 항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었으며, 노태우 자신이 6월 국민항쟁에 항복을 선언한 만큼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 들어서서 오히려 더욱 애용되고 그 적용범위를 사회 전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구속자는 5공시절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6)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정과정의 문제점

첫째:

국보법의 개악이 대체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못하여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적법성 조차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법률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점이다.

야당의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자유당의원들만으로 국회 본회의 의

결을 마친 2.4파동의 3차개정이 그렇고 쿠데타 권력기구에 불과한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거나 전면개정된 과정이 그렇다.

둘째:

국보법의 개정은 권력편의주의적 과잉형벌화의 과정을 거듭해왔다는 점이다. 이같은 과잉형벌화는 개정시마다 법정형이 상향조정되고 처벌대상 행위유형은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국보법의 제정 당시에는 가장 중한 반국가단체 조직죄의 경우에도 이 죄가 형법상의 내란죄에 비추어보면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이었으나, 1차 개정 시 최고법정형이 사형으로 올라간 후 이후 개정안에 당연한 듯 그대로 이어져 왔고, 박정희시절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개정시 5년 이내의 재범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5공시절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한 전면 개정 시에는 반공법 상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했던 것이다.

한편 제정 당시에는 반국가단체 구성, 살인, 방화, 파괴 등의 죄만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2.4파동에 의한 개정 시에 국가기밀탐지, 정보수집, 편의제공, 인심혹란,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추가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반공법 제정시 단순 고무, 찬양,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 첨가되었으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한 전면개정 시에 다시 혀위사실 날조, 유포가 추가되었다.

세째:

국보법의 빈번한 개정은 정당성의 결여라는 정권의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정권유지의 보루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위기에 직면한 말기의 자유당정권이나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정통성을 얻지 못한 군사독재 정권들은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서 국보법을 개정, 활용하였다.

역대정권은 정치적 위기와 남침위협을 강조하면서 국보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왔지만 이는 국가적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도덕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이요 위기의식의 조작이라 할 것이다.

장기구금 양심수 문제와 국가보안법

서준식(민가협 장기수 가족협의회 회장)

I. 장기구금 양심수, 어떤 사람들인가?

(1) 장기구금 양심수 혹은 ‘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는 장기구금 양심수를 7년 이상의 형기를 선고 받은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형법상 간첩죄(98조)에 선고되는 형벌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199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감옥에는 149명의 장기구금 양심수가 있다.

149명의 장기구금 양심수는 “월북기도”(3명)등 몇몇 경우만을 제외하고 거의가 “간첩”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전쟁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쟁 때부터의 좌익수 중에서 간첩죄를 적용 받지 않았던 사람들(빨치산등)이 사면, 가석방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작년의 사회안전법 폐지등의 과정을 거쳐 모두 출옥해버렸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6월 항쟁 이후의 고조된 민주화 요구에 밀린 노태우 정권은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양심수 대사면 조치(1988년 12월 21일)를 단행했는 데. 이때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많은 장기수를 석방하면서도 250명 가량의 “간첩과 비전향 좌익수를 석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국 1988년의 “12·21” 대석방 조치와 1989년의 사회안전법 폐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장기구금 양심수 문제”는 “간첩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거의 다가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는 149명의 장기구금 양심수

표II): 사건 유형별, 연도별 통계. (1989년 11월 현재)

사건유형\사건연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1. 월북·행불자 가족																				1	2			
2. 월남자																								
3. 남북 귀환 여부																					1			
4. 제일동포																								
5. 일본 관련																					1			
6. 운동관련 해외유학생																					1			
7. 월북기독																								
8. "통일혁명단" 재건																					1			
9. 남파 공직원	2	2	1	1	2	2				6	1	4	4	2	1	1	8	1	1	3	7	5	1	
10. 외국 경유 방북																				1	2	1		
11. 기타																				2	1			
12. 미확인																				1	2			
합 계	2	2	1	1	2	2				6	1	4	4	2	1	1	8	1	1	3	12	6	10	5

증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58명의 비전향 좌익수는 모두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나머지 91명의 전향자들은 대구, 안동, 전주, 광주의 4개 교도소에 분산 수감되어 있다. 이들의 연령별, 복역 연수별 분포는 표I, 표II와 같다.

(표 I)

연령별 장기구금 양심수	
70세 이상	17
60세~69세	42
59세 이하	95

(표 II)

역연수별 장기구금 양심수	
39년	2
35년~38년	5
30년~34년	11
20년~29년	26
19년 이하	105

앞에서 말했듯이 장기구금 양심수는 “간첩”이다. 이 “간첩”들은 대체로 두가지 범주로 나를 수 있다.

하나는 장기간의 가혹한 고문으로 조작된 협의가 농후한 “조작간첩”들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남파되어 온 공작원들이다. 특히 후자는 거의가 2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초(超)장기 구금을 당하고 있다.

(2) 조작간첩 문제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문으로써 간첩으로 조작된다는 사실을 일부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간첩조작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민주화실천장기수가족협의회에서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장기구금 양심수 149명 중 남파공작원 48명과 기타 몇몇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간첩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989년 11월 현재 복역증인 장기구금양심수 211명의 사건유형별 및 사건 연도별 통계는 표III과 같다.

사건유형 \ 사건연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미확	합계 (현재)
1. 월북·행물자 가족						1		2	1	3	2	2	1				15 9
2. 월남자								1		1	1	1					3 2
3. 남북 귀환 여부							1	2	1		1	2	1	4	2		16 12
4. 재일동포								1	1	3	3	1	1	3			14 6
5. 일본 관련								1	1	1	1	1	1	5	10	2	40 29
6. 운동관련 해외유학생															6	1	8 8
7. 월북기도									1		1	1					3 7 3
8. "동일현명단" 재건									3								13 8
9. 남파 공작원										1	1						3 59 48
10. 외국 경유 방북											1	1					1 9 4
11. 기타	1								1	2		2	1	5			16 10
12. 미확인										1	1				5	11	10
합 계		9	2	1	4	6	5	5	7	11	18	11	27	12	3	15	211

이 통계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50년대, 60년대를 통하여 상당수의 '남파공작원'을 파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어진다. 정확하게 말해서 '71년의 남북적십자회담 이후에는 북한에서 공작원을 거의 남파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안측에서도 상식이 되어 있으며 70년대 이후의 남파공작원은 50~60년대에 남파되었다가 70년대 이후에 검거되었거나 기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에도 남파가 아닌 간첩사건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특히 5공때 간첩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남파가 아닌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첫째, 간첩행위를 증명 할만한 물적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둘째, 7년, 10년 등 간첩사고 치고는 뜻밖으로 적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는 점, 셋째, 이 모두가 한결같이 보통 1~3개월간의 불법구금하에 처참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 70년대 이후 부분에서 많은 간첩이 조작된 혐의가 있는데, 50~60년대에 남파공작원들을 검거해서 취조하던 경험이 쌓여서 간첩사건의 틀이 확립 되었는바, 70년대 이후의 소위 간첩사건들은 대체로 하찮은 행동을 이를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간첩이 조작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조작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우리나라를 무겁게 짓누르는 반공이데올로기이다. 반공이라는 개념이 모든 가치의 왕으로서 여타의 진정한 가치들, 이를테면 자유, 민주, 인간의 존엄 등 위에 군림하는 이 반공지상주의의 현실은 우리나라에 가치의 전도현상을 광범위하게 만연시켰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반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특히 수사관들은 의식을 머리속 깊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1) 수없이 난립하는 정체 모를 밀실수사기관 2) 불법구금, 불법연행의 관습화 3) 고문의 관습화 4) 검사의 대공수사기관에의 종속 5) 간첩사건에 있어서의 판사의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간첩'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다름이 아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역대 독재정권들이 정권안보를 위하여 언제나 보다 많은 간첩사건을 필요로 해왔다는 점에 있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가령 선거 때라든지 민주화운동의 고조기에 신문지상을 요란하게 장식하는 간첩단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은 궁지에 빠지면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내세워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하고 정권의 부도덕을 합리화 시킨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첩'인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속에서 간첩이 조작되는 세번째 이유가 나올 수

있다. 즉 대공수사관들의 포상육, 진급육이 그것이다. 김병진이 지은 〈보안사〉라는 책에는 대공수사관들이 이 포상육, 진급육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조작된 간첩들은 참혹한 고문과 계속되는 옥고로 갈기갈기 찢긴 체 차디찬 감방에서 신음하고 있다. 감옥에 고립된 이들에게는 지금 진상을 밝힐 길이 없다. 이들의 석방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남파공작원은 남파 '간첩'인가?

50~60년대에 북한에서 파견되어 온 공작원들은 거의가 20년 이상 구금생활을 해온 초장기수들이다. 즉 현재 149명의 장기복역 양심수 중 이들의 수는 48명이며 그 중 약 96%가 20~40년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최장기 복역자는 40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선명, 이종환씨이다.

이들은 몇 사람의 예외는 있으나 거의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형, 가석방, 특사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교도소 재소자로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야 하는 등 온갖 불이익 속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 이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든 이런 초장기의 감옥생활을, 그것도 이런 노인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일 수도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일 수도 없음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이들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석방되어야 한다.

대개 '간첩'이라 하면 "이북에서 내려온 무서운 이북 사람"이라는 느낌을 일반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50명의 남파공작원 중 압도적 다수인 34명은 남한 출신자이며 12명이 북한 출신, 나머지 2명은 미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간첩'이 우리 조국분단의 비극이요 희생양임을 누구도 실감할 것이다.

일제치하에서부터 혹은 해방직후부터 그들 나름의 믿음과 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여하려고 노력했다가 결국은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영어의 몸이 되어 감옥에서 늙어가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자화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결코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과거 행동을 조국통일에의 기여였다고 믿고 있다.

여러가지 사상적 입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방법의 통일운동을 모두 통일운동으로서 우리가 일단 인정할 수 있다면 이들의 과거 행위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자리를 잡아야 하며 이들은 당연히 간첩이 아닌 정치범으로서 명예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간첩'을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

(1) 간첩개념을 확대시키는 국가보안법

적국을 위한 군사기밀 탐지·누설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간첩죄는 어느 나라 헌법전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국 공통의 개념이다. 그 정확한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학사전:법문사 1981년 발행)

간첩--일반 교전자의 작전지대내에서 타방 교전자에게 통지할 의사를 가지고 비밀 또는 혜위와 구실하에 정보를 수집하는 자. 변장하지 않고 적의 작전지대에 잠입하는 척후와 구별된다. (15쪽)
간첩죄--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형 98).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다는 것은 적국에 알릴 목적으로 비밀로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5쪽)

국가보안법은 이 간첩 개념을 어떻게 확대 시켜놓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목적수행] 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증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밑줄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적국"을 위한 행위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간첩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요 둘째로,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기밀"이라는 새롭고 애매한 개념까지 간첩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형량이 형법에 비해서 훨씬 가혹하다는 것 등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와같은 간첩 개념의 확대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현상이며, 그것은 분명 분단상황을 반영한 왜곡인 것이다. 이런 법규정은 다시 간첩 개념을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2) 간첩을 만들어내는 판례-'국가기밀'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50년대~60년대의 간첩은 이른바 "남파간첩"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남파"는 모습을 감추는 반면 간첩사건의 유형이 매우 다양화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사건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대단히 단순한 “틀”을 가지고 있다. 즉 △(남북 어부는 북한에서 만난, 월북자 가족은 이른바 남파되어온, 일본관련은 일본에서 만난...)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포섭되어 △그로부터 세뇌교육과 지령 및 공작금을 받고 △(김포공항등을 거쳐) “잠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간첩의 징표는 국가기밀 탐지·누설이다. 이 부분이 없으면 이런 사건은(회합·통신,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는 성립될지언정) 간첩사건이 될 수가 없다.

70년대 이후의 간첩사건은 거의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해석된 “국가기밀 사건”이 되어버렸다.

국가보안법은 그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저탄을 받고 있다. “국가기밀”은 그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밀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누구라도 간첩죄의 그물에 걸리도록 이것을 최대한으로 넓게 해석해왔던 것이다.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방면에 관한...”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

“그 내용사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등등.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을 “탐지”할 경우 *산업시찰 가서 본 것들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는 말 △중앙청의 위치 *서울의 서민생활상 *신문지상에 보도된 모든 사항 *민심동향 *근로자의 생활상 *심지어는 “짜장면이 싸고 맛이 있다”는 말까지도!

물론 군사기밀의 개념도 확대해석되고 있기는 하다(군부대에 면회 가서 본 것들, 레이다기지 근처에 야유회 가서 본 것, 비행장 근처를 버스타고 지나면서 본 것 등등). 그러나 이 경우는 “국가기밀”만큼 포괄적이 아니다.

간첩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조되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독재 정권의 부도덕을 합리화시키고 민주화운동을 위축시켜온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정권안보를 위하여 간첩을 만들어내야 할 정치적 필

요와 간첩 개념의 체계적인 확대해석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때문에 간첩의 명예를 지고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간첩’,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보루--

우리나라에 있어서 “간첩”개념은 분명 조국분단으로 말미암은 개념이며 따라서 “간첩”들은 분명 조국분단의 “볼모”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왜곡된 “간첩”개념의 공포에 짓눌리며 살아왔다. 이 “간첩”개념의 공포는 동시에 간첩수사를 빙자하여 제멋대로의 폭압을 일삼아온 거대한 비밀경찰기구(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이것은 통치기술로서의 일종의 “공포정치”에 다름이 아니다.

이 공포정치 하에서 금기의 성역으로 밀려난 간첩문제는, 그러기에 더욱 그것이 올바르게 조명을 받을 때 이 공포정치를 깨뜨릴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간첩문제는 분단시대의 마지막 금기라고 할만하다. 왜 금기인가? 분단체제를 오랫동안 지탱해온 것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신화였다. 이 신화의 한복판에 “위협”的 전형으로서 존재하는 간첩을 머리에 뿔이 난 무시무시한 살인마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왜곡된 이 간첩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포정치는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단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흔히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의 현실적 강제력이요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소위 “북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는 이 국가보안법 존속논리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간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참으로 간첩을 만들어 내고 공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공포의 그늘에서 위세를 떨쳐온 국가보안법은 자신이 종이를 만든 “간첩”的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확실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통일인사와 국가보안법

임종국(임수경 후원사업회 사무국장)

1. 들어가는말

남한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친미주의적인 현정권의 체계에 대응하는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보안법의 법적 활용은 노동·출판·사상 등과 조국통일에 대한 현정권의 입장과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 현정권은 언제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들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위선과 기만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경험하고 입증되는바 현정권의 “선언”에 관계없이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분단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준수”하고 “공경”하여야 할 “실정법”이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제정 절차와 같은 역사적인 것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사, 기소 등의 절차적인 측면 보다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 원칙과 국제평화주의에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자주교류를 직접 실천하였던 통일지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남북자주교류,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1) 문익환 목사

문익환목사는 1989년 3월 평양을 방문하여 분단45년을 청산하기 위한 남북자유왕래와 자주교류의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4·2공동성명은 7·4남북공동성명이후 최초로 합의한 공개적 문건이었다. 또한 공동성명은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간 정부당국의 교류가 작은 성과도 내지 못한채 상호비난과 책임전가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감이 쌓여왔다. 그러나 이의 공동성명은 선의와 성실에 기초한다면 전민족이 동의하는 통일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또한 북한을 보다 유연한 태도와 입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한반도의 통일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동족으로서의 신뢰회복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체포, 투옥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하였다.

1. 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김일성이 1989년 1월1일 신년사에서 연방제통일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것을 제의하고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각 총재들과 김수환, 백기완 및 피고인을 초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월 30일 피고인의 집에서 남북대화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북남지도급 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허담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받아 동년 2월4일 백기완과 위의 초청을 수락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월9일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유원호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동년 1월 17일부터 동월 27일까지 사이에 북한을 방문한 정경모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동위원회 명의의 방북초청장을 받는등으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연방제통일 논의를 위한 입북지시를 받음으로써 북괴의 지령을 받고 북한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2. 잠입(동법 제6조)

“평양체류중 허담으로부터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면서 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을 통하여 방북취지와 성과를 홍보하고 귀국시처벌은 부당하고 구속되면 남북대화가 중단된다는 이론을 대내외에 전달하여 남한정부에 압력을 넣어 구속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유원호씨의 경우는 “1988년 9월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일본국~~“씨알의 힘”사무실에서 정경모가 ‘반국가단체’인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아 문익환을 입북시키려 한다는 것을 잘알면서도 ~~ 그 자리에서 국내에 들어가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직

접 만나서 잘 설명하고 ~~라는 지시를 받고 승락한 후 김포공항을 거쳐 입국함으로써 ~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바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입하였다 것이다.

3. 찬양 · 고무 · 동조(동법 제7조)

-공소사실은 방북중의 발언을 일부씩 몇대로 끊어서 문제삼고 있다.

평양 도착 성명중 "나는 꿔 오래 전부터 한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과 만나 서로 흥금을 털어 놓고", "김일성 주석과 더불어, 서로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뜨겁게 부둥켜 안고 민족의 빛나는 미래에 대하여 ~ 저는 기쁨과 가슴을 얹누를 수가 없습니다."(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인 김일성을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3월27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빨간스카프를 목에 맨 사실과 혁명 열사통, 애국 열사통의 참배 헌화는 '북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하였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의례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4·2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의 공동성명을 "대한민국정부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교차승인 등을 통한 통일접근방법에 반대하고 북괴의 정치군사회담 우선 주장 및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한편 북괴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찬양"하였다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후 기자회견 중에서 "(남쪽의) 많은 젊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와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자기들의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청춘과 인생을 민족의 제단에 바칩니다.", "민중과 하나되어 가지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외세에 예속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참 자주하는 민족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향해서 전 운동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북한의 반파쇼민주화투쟁 선동과 미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잘못된 법은 얻어 맞아 터지면서 깨는 길을 걸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깨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북한의 국가보안법철폐 선전 · 선동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4월4일 북경국제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서 "나의 북한방문이 정부의 통일논의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북쪽의 고려연방제에 대해 대한민국정부가 이렇다 할 통일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 나의 통일론과 북의 고려연방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데서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4. 회합 · 통신(동법 제8조)

방북기간중의 모든 대화, 회담사실들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다.

5. 금품수수(동법 제5조)

공소장은 허담으로부터 김일성주석이 준다는 선물을 전해 받았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죄를 적용하고 있다. 문익환목사가 받은 선물은 여자용 옷감 2벌, 자개병풍 가리개 1개, 산삼1상자, 금강산 사진첩 1권, 윤동주의 학창시절 사진 2매, 조선우표첩 1권, 박연술, 백두술, 들쑥술 각 1병, 성려천과 담배10갑 등이다.

(2) 임수경 전대협대표 · 문규현 신부

1989년 봄, 남한의 모든 대학을 대표하는 전대협은 7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500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전대협은 공식대표로 임수경씨를 선발하였고 임수경씨는 혈혈단신으로 일본과 유럽을 거쳐 6월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임수경씨는 세계각지에서 몰려든 만 오천명의 참가자중 유일한 남한측 대표였던 것이다. 임수경씨와 문규현 신부는 8월15일 역사적으로 판문점을 통과하였다. 임수경씨와 문규현신부의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족대단결의식을 대중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분단의 벽을 통과하자마자 안기부는 미군으로부터 인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다음과 같이 공소하였다.

1. 이적단체 가입(국가보안법 제7조3항)

"1988년 12월26일 북한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전대협 앞으로 평양축전에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발송하자 같은 달 30일 전대협은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당국을 배제한채 평양축전참가를 추진해 오면서 ~~지역별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는데, 임양은 전대협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의 선전국원으로서 평양축전 선전사업을 담당하다가 5월18일 용성총련 평양축전준비위원회 정책기획실장에 추임"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하고 이에 동조해서 북한을 이름ake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축전준비위원회는 전대협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이 아니라 축전준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2. 지령수수, 탈출(같은법 제6조3항)

임수경씨가 박종열씨 등 전대협 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1988년 12월26일 북한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전대협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온 사실을 알고 전대협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할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을 수락한뒤 출국해서 일본등을 경유, 평양에 도착함으로써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으로 탈출했다는 것이다.

3. 북한에 가있는 동안 기자회견, 평양축전참가, 연설,『남북청년 학생공동선언문』발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참가, 대학방문, 선물받기등을 통해, 같은법 제7조1항(찬양·고무·동조), 제8조1항(회합·통신), 제5조2항(금품수수)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4. 자진지원(같은법 제5조1항), 군사상 이익 공여(형법 제99조)

“임양이 1989년 6월30일 입북 이후 8월 중순경까지 고려호텔등지에서 김창룡및 임양의 안내를 맡아온 정명순이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전대협은 19개 지구로 나뉘고 선전국 등을 두고있다. 전대협의 동원 능력은 3만명 정도이다. 대학입학은 어려우며 졸업후 취직도 어렵다. 대학의 등록금은 부담이 매우 크다. 대학생들의 북한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반복·반공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다.’는 등 대학가 실태 및 학생운동권의 활동상황을 자진해서 보고함으로써 북한 공동집단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5. 잠입(같은법 제6조2항)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임수경씨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국한 것에 대해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무엇을 지령이라고 보았는지 분명치 않고, 검찰의 역할까지 도맡아 완수한 제1심 법원은 그 판결에서 “지령”에 해당될 만한 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은 각자 입북후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 북한에 체재하면서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들과 위와 같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의 의사가 없음을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등 위『남북청년 학생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사항과 같은 북한의 통일 방안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남한으로 가서 반미, 반정부활동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라는 판시와 “북한공산집단 장교로부터 분계선을 넘어 곧바로 가지 말고 자유의 집 좌측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라는 판시를 해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안내일 뿐이다)

(3) 통성당화가

통성당화가는 민족민주미술전국연합 공동의장으로 대형 걸개그림<민족해방운동사>를 슬라이드로 제작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공소되었다.

-1988년봄 성낙영목사의 초청으로 독일 여행

성낙영목사로부터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이론>이라는 책으로 학습

-성낙영목사의 주선으로 북한공작원 김평원을 만나 평양축전에 참가할 것을 지령받고 공작금 5천달러를 받았다.

-국내에 잠입하여 <민족해방운동사>제작

-<말>, <역사비평>, <흐름>등 잡지와 <비류백제와 일본국가의 기

원>, <탈춤의 역사와 원리> 등 책자를 성낙영 목사에게 보냄
-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성낙영목사에게 초청장 부탁
-<민족해방운동사>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

*이중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1심과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섯번째 앞의 세책과 마지막의 경우는 유죄로 판시되었다.

3. 자주교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지령이란 지배·복종의 신분적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구체적인 사항에서 지령자가 우위에 서서 어떤 일을 일러 시키거나 거역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띠는 것임이 명백하다. 형법은 행위규범으로서 수범자인 국민의 일반적인 언어감각과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한다. 법전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하는 용어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지령이라고 하는 증거의 초청장은 문익환목사나 임수경씨의 경우 모두 통일원의 남북대화 사무국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다. 초청장은 은밀하게 전달되기는 커녕, 정부의 협조까지 얻어 전달되었으므로 지령의 개념에 해당될 수 없다.

탈출이라는 것 또한 이들이 북한에 귀순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남한에 돌아오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잠입은 몰래 들어온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나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씨 등은 은밀하기는 커녕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당당히 김포공항으로, 판문점으로 돌아왔으며 모든 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다. 잠입·탈출이라는 조항은 헌법에 명시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찬양·고무·동조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통일의 전제조건인 상호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회합·통신은 근본적으로 동포끼리의 만남을 제한하고 있는데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주영과 박철언은 통치권이라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으로 합리화 되고 수백명의 노동자를 몰살한 김현희는 사면되는 현실은 현정권이 통일 보다는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4.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의 주된 기조는 북한이 ‘반국가단체’이므로 그 구성

원과의 회합, 통신을 전면으로 금하고 있는데 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고 선언하고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한 다음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음 제66조는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으로 평화적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1948년 9월 9일 창건된 이래 국제사회에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서 현재까지 존재해왔고, 100여개국 이상의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를 하나의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고 그 실체를 존중하는것이 국제평화주의에 합치하는 것이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헌법 제3조는 언젠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관적 희망 및 통일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령하여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 엄연히 하나의 주권국가인 북한을 타도 또는 토벌대상으로 규정하여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 하고 있으므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선거(1948년)가 실시된 그 지역에서 합법성을 지니는 유일한 정부"이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고, 대한민국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971년의 남북 적십자회담, 1973년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제의는 물론이고 1972년의 7·4남북 공동성명, 1980년의 총리회담 제의,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시, 올해 9월초 남북고위급회담 등 대북한 제의와 교류 및 공동성명은 북한을 하나의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현정권이 행한 1988년 7월7일 선언 및 UN총회연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온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로지 주권국가만이 가맹국이 될 수 있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고 요청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조선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과 만날 것을 제의하며 평

양방문을 제의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지역으로의 이전 및 그로부터의 귀국, 북한 및 그와 관련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들의 실상에 대한 조사·연구·소개 등 평화통일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주교류에 수반될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오로지 북한 및 그 주민들에 대한 비난과 혹색선전, 매도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5. 결론에 대신하여

험난한 길을 넘어 자주교류를 몸소 실천한 문익환목사, 유원호씨, 임수경대표, 문규현신부, 서경원의원, 홍성담 화가, 등 통일인사들의 방북과 관련하여 정부는 통일인사들이 통일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조작된 그림표를 만들어 간첩으로 몰기에 바쁘고 해외단체들을 이적단체로 조작하고 기소도 하기 전에 여론재판을 조작하였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은 현정권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비춰주는 거울 노릇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통일인사들의 애국적 행동은 통일의 장애물이 군사적 대치상태와 국가보안법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운동을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여론조사는 북한을 더이상 적이 아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아시안게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남북선수들의 회동과 같은 일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지난 8월 범민족대회에서는 이적단체로 규정받던 해외대표들이 입국하였고 특히 임수경씨와 국제평화대행진과 단식을 함께 했던 북미주대표 홍정화씨와 노소윤씨의 남한내 범민족대회의 참가는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무력화되는가를 보여준다. 통일은 꿈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이다.

그 전제로 자유왕래는 필수적이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군축은 필연적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인사들의 근황을 간략히 정리하며 마치고자한다.
문익환 목사 - 전주교도소, 징역7년, 자격정지7년으로 기결
문규현 신부 - 공주교도소, 징역5년, 자격정지5년으로 기결
임수경 대표 - 청주교도소, 징역5년, 자격정지5년으로 기결

홍성담 화가 - 대전교도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서경원 의원 - 진주교도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으로 기결
의원직 상실

노동운동탄압과 국가보안법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90년 8월 현재 90여명의 노동자 또는 노동운동관계자가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에 걸려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 이는 400여명에 달하는 구속 노동자 수에 비추어 볼 때 25%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87년 이전 시기에 구속 노동자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수가 대체로 소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엄청난 증가추세인 셈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외세와 독재정권 아래 각계 각종 민중의 계반 권리가 압살되어온 사회에서 격언이 된 말 중에 “애국자와 민주주의를 찾으려면 감옥으로 가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날 이처럼 많은 노동자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그만큼 노동계급의 조직, 의식적 성장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만큼 해방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로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지나면서 우리 노동계급은 역사 전면에 자신의 피와 눈물로 쌓 해방을 향한 발걸음을 새겨왔던 바 그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곧 “단결”과 “투쟁”에 있음을 깨달아 왔다.

단결과 투쟁의 문제는 곧 조직화와 의식화의 문제인 바 역대 정권은 이 조직화와 의식화라는 말을 아주 금찍한 말로 여기도록 세뇌시켜왔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현노태우정권 또한 이 말을 극도 불온시할 뿐더러 바로 이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를 겨냥하여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권이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다 함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곧 생명을 내놓으라 요구하는 셈인 것이다.

(1) 국보법 탄압의 양상

1)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위한 탄압

인천에 있는 명성전자 노동조합의 학선화, 김기자씨는 90년 1월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죄로 구속되었는데 3개월 전에 회사 총무부장이 조합사무실에서 찍어간 한 장의 사진이 이 엄청난 죄목의 증거가 되었다. 당시 조합사무실에 놓여있던 “조선통사”라는 제목의 책을 몰래 찢어다가 임투 직전에 그 사진을 빌미로 위원장과 간부를 구속시킨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수없이 많은데 올해 2월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 노조사무실에 600여명의 전경이 낙입, 수색하여 노조 도서문고의 책을 빌미로 위원장과 홍보부장을 구속하였고 거제 삼성조선 노조 이교우위원장의 경우도 임투와 노조민주화투쟁을 앞두고 도서를 빌미로 구속되었으며 그외 다수의 노동자가 사업장의 투쟁과 관련 연행되었다가 경찰의 가택 수색에서 단 하나의 유인물, 소책자, 이적성의 혐의가 걸린 도서만 나와도 곤장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억지 탄압은 당장의 노조투쟁을 저지하려는 의도 외에도 노조간부들과 열성적인 조합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여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떼어내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2) 상담소등 노동운동단체들에 대한 조작 사건 탄압

89년 공안합수부 구성 이후 노동상담소, 문화단체 등 공개 단체들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은 이 단체들에게 주로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를 걸기 위해 느닷없이 연행, 수색, 압수 등을 해왔는데 한마디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이 외부 불순 세력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실제로는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선진적인 활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세력들을 거세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진전을 막아내고자하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이 일반 대중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자니 당연히 조작할 수 밖에 없고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인권유린이 밥먹듯 행해지고 있다.

90년에만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사건, 마산 일꾼노동문제연구원사건, 북부지역 노동자연맹사건, 인천상담소와 일터해고자모임사건 등이 만들어졌다. 소위 공안당국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약간의 미행과 엄청난 상상력으로 준비한 이적단체의 그림을 갖고 관련자들을 잡아들인 뒤 집과 사무실을 뒤져 “증거”를 찾아 보충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조작을 꾀하였다.

인천상담소사건의 경우 노동자들은 갑자기 집과 길에서 연행되어서는 자신이 왜 치안본부에 끌려와 있는지도 모른채 기관원들의 추궁을 받았으며 생면부지의 사람끼리 조직을 만들고 모의를 했다는 그림표를 인정할 것을 강요받아야 했다. 또 성남 “노동자의 집”에서 일하던 박진현, 유한래씨 등 상담요원들은 어느날 갑자기 연행되어 지역 내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택수색에서 나온 노동자교육용 책자를 빌미로 결국 구속시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공안당국의 조작사건들은 그들 스스로도 공소를 유지 할 수 없어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문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혐의 사실을 기정사실로 굳혀놓고는 역시 몇가지 유인물과 책자를 빌

미로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시키는 것이 고정 순서로 되고 있다. 특히 지방신문에서는 사회면 1면에 “OO 지역 산업체 침투를 목적으로.... OO을 사주, OO분규에 개입....”이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그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노동운동 자체를 불온시하고 외면하도록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3) 노동자 정치조직 사건

노동운동의 진전에 따라 노동조합 이외에도 노동자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들이 결성되는 것은 그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지극히 합법적적인 경로이다. 우리 역사에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걸쳐 노동자 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있어왔으며 특히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비약적 성장을 반영하여 수다한 정치조직들이 결성되었고 현재 현실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현재 반합법,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정권이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정치적 이념도, 사상도, 조직도 불법시되고 심지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는 우리 현실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강요되는 활동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이들 조직들이 무슨 큰 음모와 계략 때문에 음모적인 방식으로 암약하고 있는 듯 선전해왔으며 노동운동은 물론 전체 민족민주운동이 이들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또 보이지 않는 계략에 의해 사회의 혼란조성에 이용되고 있는 듯 주장해 왔고 특히 역대 정권은 이들 단체들이 “반국가단체” 즉 이북의 사주를 받아, 이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탄압의 이유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자 정치조직을 조직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가진 것을 다해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생각에서 정치조직을 결성했던가?

80년대 초부터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생산현장의 노동자로 취업하기 시작했던 바 그 주요인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

화와 군부독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압살, 외세의 가중되는 침탈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으며 이러한 제반 모순의 극복은 그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 특히 노동계급의 자각과 실천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었으며 그 큰 역사의 흐름에 일조하기 위한 나름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현장투쟁을 통해 단련되고 자각된 선진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던 바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투쟁조차 막강한 정권과 자본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탄압을 받고야마는 조건 속에서 임금이상 투쟁만으로는 즉 경제적인 요구투쟁만으로는 억압과 착취, 완전한 무권리 상태를 균질시키지 못한다는 자각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활동을 결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 두가지 방향의 큰 흐름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 노동자들의 정치조직 결성이 것이다. 정권은 이들 조직들의 일부 지식인 출신자를 문제 삼아 노동자가 아닌 자들이 노동운동에 개입했으므로 불순한 의도가 있으리라는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정권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 역사나 먼저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을 하고 그를 위해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선도적 실천으로서 다수 민중을 진보와 혁혁의 길로 이끌었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조직에 있어서 지식인 출신이든 노동자 출신이든 자신이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먼저 깨달은 선각자로서 역할을 하려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며 노동자들은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주체적 존재가아니라 스스로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역사 진전을 위해 스스로 투쟁에 나서는 혁혁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조직을 결성한 선진적 노동자들은 이북을 위해서도 아니요 무분별한 선동에 휩쓸린 것도 아니요 오직 바로 자신이 발디디고 선 남한 사회의 제반 모순 속에서 바로 그 모순 때문에 투사가 된 사람이며 그들의 목적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권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이적성”의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독단적 날조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작년 말 구속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합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직) 강령을 통해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남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구조를 깨뜨리고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것과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반민중적 독점재벌의 해체와 기간산업의 국유화..... 민중민주주의 사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인민노련의 활동목표이다. 87년 이후 정부는 민주주의를 공언해 왔으나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달라진게 없으며 1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정당 결성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 밖으로 이적단체로 모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정권은 이들 단체들이 마르크스-레닌의 사상을 연구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검토함을 들어 자유민주체제를 부인, 폭력 혁명을 피한다는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우선 사상적 측면에서 마르크스-레닌 및 제반 사회주의 사상과 실천 이론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교양과 상식에 속하는 영역이며 정권이 스스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치적으로 자랑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더 더욱 위험시 될 수 없는 사항이다. 더 나아가 사상이란 한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일진데 정권이 주장하는 가치체계와 다르다 해서 수년 간의 인신 구속과 고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연의 권리인 사상의 자유를 침저히 유린하는 행위인 것이다.

(2) 국가보안법 탄압의 본질

이상과 같이 노동자들에게 씌워진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결여하고 있는 명백한 노동운동 탄압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계급은 사회의 근간이자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일수록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잘알고 건설적인 대안을 철저히 고민해야 하며 같은 민족인 이북에 대해 잘 이해하여 자주적

이고 평화적인 민족의 통일을 준비해야하며, 자신의 노동이 자신과 가족, 민중 전체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진보를 약속하는 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정권의 논리대로 한다면 스포츠 신문과 구름잡는 이야기, 혹은 사대주의적이고 독재적이며 돈의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출판물 외에는 볼 수도 없고 그런 것 이외에는 입에 담아서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노동자라는 객관적인 사회 계급적 처지에서 개인과 계급과 민족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극히 작은 노력조차도 봉쇄하는 자체인 것이다. 또한 자신들은 정당과 군부와 재계 내부를 막론하고 TK니 월계수회니 하는 차기 정권 장악을 위한 정치조직을 마음대로 결성하면서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최소한의 정치조직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는 노동자들은 군부독재 아래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숨죽여 살아가라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이적성 관련 논리를 여타 노동관계법으로 확대시켜 노동기본권까지 제약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행위, 대기업의 행위는 특히 사회혼란과 이북에게 름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제약을 받게된다. 대기업과 방위산업체가 내외독점자본의 이윤확보의 기둥이자 군사독재정권의 물리적 발판임을 고려할 때 누구를 위한 기본권의 제약인가는 더욱 분명해진다. 참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노동계급에게는 어용노조가 아닌 조직은 허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생존권투쟁 영역도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외세에게 무한대의 노동자 뼈땀을 갖다바치겠다는, 독점재벌에게 무한대의 탐욕과 착취를 보장하겠다는, 대대로 노동자들에게 멸시와 천대, 가난과 파탄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의도의 표현일 뿐이다.

(3) 악법은 범해서 고친다.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나 역대 정권이 허용한 현실에 순응하고 그 턱두리에서 신음함으로써 살 길을 열어온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력을 지향하고 울타리를 넘음으로써만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미 노동악법의 온갖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악법을 스스로 범하여, 끌려갈지언정 승리함으로써 그 악법의 본질을 하나하나 폭로하고 깨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 운동의 진전에 따라 또 하나의 더욱 악랄한 장벽인 국가보안법 앞에 마주 선다 해도 우리의 해결책은 역시 그 장벽을 빠져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빌로 차고 힘으로 부수고 실제로 넘어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직과 의식화는 곧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빼앗기고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조직을 달라하고 자주적인 투쟁을 포기하라 하고 진보적 사상, 이론에 대한 학습을 중지하라고 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또 이름만 바꾼 개정안이니 대체법안 또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사상, 조직 결성,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자하는 한, 노동운동의 피어린 성과를 노리고 있는 한 하등의 탄생 이유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되고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가 석방되지 않는 한 더욱 많은 노동자가 이 희대의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이땅의 애국자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감옥으로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며 실제로 이 법을 종이호랑이인 동시에 휴지조각으로 바꿔나가고야 말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출판·사상의 자유

신형식(출판탄압 공대위원장)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만큼 출판활동을 하기 힘든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9월20일 현재까지 39명의 출판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출판·사상의 자유는 출판인을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과 맨몸으로 부닥쳐 출판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시켜 생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시내 서점에 가보면 온갖 종류의 이념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6공화국 출판탄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과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 등)에 의한 출판인의 연행·구속과 출판사·서점에서의 출판물 압수·수색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1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공화국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출판인의 구속은 늘 어나기만 했다. 제5공화국 7년 동안에 출판인 구속자의 수가 33명이었는데 반해 제6공화국 2년6개월 동안의 구속자의 수가 86명에 이른다. 이처럼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도 허를 내두를 정도의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86년에서 87년, 89년, 그리고 90년 현재까지 3차례의 대탄압이 자행되었는데, 이는 민족민주 출판문화운동의 발전과정과 일치한다. 즉, 86년에서 87년의 시기에는 정통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서적 내지는 맑스-레닌 원전 출간이, 89년에는

북한 원전의 출간이, 그리고 90년에는 국내 연구자들의 저술 출간이 이루어졌고, 이는 매시기 꼭두각시 정권에서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연행자 중 구속자의 비율이 매년 두 렷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공안당국의 탄압이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와 아울러 검찰·법원에서의 법적용과정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특히 89년의 경우 구속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곧, 연행=구속=기소=유죄판결=집행유예의 과정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보안법의 횡일적 집행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현재 공안·법률 기관들의 도서평가능력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모든 구속 출판인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된 책의 몇몇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짜집기하여 출판물의 이격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책의 전체 내용전개는 별개로 한 채 특정 문장만 검찰이나 법원의 입맛대로 재구성하고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제5공화국 시절 모 판사의 판결문은 검사의 공소장의 오자·탈자 까지 그대로 베껴놓아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처럼 이념로서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소양은커녕 이 해능력조차 부재한 공안 담당 판·검사들에 의한 법집행이 국가보안법을 더욱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법률적으로는 '평화통일정책'을 밝힌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7·7선언과 89년9월 발표된 정부당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반안'과도 모순된다. 평화통일 추구는 남북한이 '대동한 법적지위'에 서지 않을 경우 전혀 현실적인 토대를 갖지 못하므로 북한을 범죄단체인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한 관계에 대한 현행 법체계는 서로 모순되는 이원적 구조로 돼있는 것이다.

형사법 체계에서 상호 모순되는 법을 근거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이 주장되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이 존재하는 한 지켜져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국가보안법 각 조항의 불명확성 및 자의식 해석 가능성과 맞물려 어이없는 법적용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동안 국내의 비웃음을 사왔다.

지난 4월2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90% 이상이 이 조항 위반일 정도로 핵심적인 조항인데, 특히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 89년 공안정국을 계기로 본격화된 출판인에 대한

대량구속사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애초에 출판탄압을 위해 검찰권이 악용되었던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초이다. 어떤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주요 원칙이다. 이들 자유에 대한 구속이나 제한은 비민주적 강압에 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합리한 왜곡을 통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구체적 형태가 학문과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경제개발, 정치안정, 과학·기술진보, 문화창달 등 인간생활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모든 가치는 개방적이고도 엄밀한 학문적 탐구와 탐구결과의 제한없는 사회적 공유없이 성취할 수 없다. 체계적 사상을 형성하고 보다 발전된 이론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연구자는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학문적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출판계는 어떠한 경제·정치적 세력의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민족민주적 출판문화운동은 한국사회의 사상·문화적 토양에 거대한 변모를 가져왔다. 90년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출판문화운동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사상·출판의 자유가 시급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소련·중국·북한 등 사회주의권과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막스·레닌주의 저작과 북한원전을 금서로 둑어놓는 시대착오적인 출판정책이야말로, 민족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배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문화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조장되면서도, 자주·민주·통일운동 세력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극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90년대 한국사회의 완전한 사상·출판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경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정 또는 대체 입법의 시도는 즉시 중지되어, 시대 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출판활동의 규제와 불이익을 원상회복시키고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증인 출판인의 석방, 수배증인 출판인의 수배해제, 압수당한 도서의 반환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뮤여있는 도서에 대하여, 정치적인 해금을 단행해야 한다. 출판에 대한 탄압이 단지 출판탄압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법 개악을 통한 방송장악기도, 국군조직법 개악, 내각제 개헌기도 등과 같은 민자당일당 독재의 장기집권 실현을 위한 전체 변혁운동에 대한 정략적 탄압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판사상이 자유를 행취하기 위해 출판인들이 과학적 이론과 사상을 전파해야 할 임무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완전한 출판, 사상의 자유행취를 위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탄압사례

진보적 이론과 민중 실천과 결부된 출판운동은 80년 광주학살 이후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변혁을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게 된 민중의 요구가 기초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판운동에 대한 탄압은 시기별로 보면 80년대 이전과 81년~85년 (이른바 유화적 시기), 85년~87년, 그리고 현재로 구분된다. 81~85년까지는 주로 제3세계와 서구 좌파 지식인의 저작에 대한 탄압이 판금, 판매 중지 종용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85~87년 시기에는 마르크스-레닌 원전 등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었다.

87년 이후 시기에는 북한바로알기운동으로 비롯된 북한관련 출판물과 6월국민항쟁, 7, 8월 노동자대투쟁 등으로 본격 개시된 민중투쟁과 관련된 책자, 국내 연구 성과에 대한 탄압 등으로 이어져 왔다.

80년대부터의 출판인 구속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8
구속자	2	4	0	0	0	1	12	22	10	43	35
연행자						14	68	85	31	78	22

위의 간단한 도표로도 알 수 있듯이 출판인과 출판운동에 대한 탄압은 민중운동의 성장과, 그에 대한 정권의 탄압 정도와 비례하고 있다. 또한 연행자 중에서 구속 처리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특히 민중의 조직적, 의식적 성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온 6공화국 아래서 출판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새롭고 진보적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중 계 세력과 이를 압살하고 날고 허물어져가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파의 사상적 내전 상태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한권의 책을 손에 들기까지 소위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에 의해 입체적인 저지, 탄압이 행해지는데 출판악법에 의한 1차적 저지선이 쳐진 위에 자본이 영세한 출판사들의 사정을 노려 납본기일을 빌미로 한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로 위축시키는가 하면 사법부에 사법심사를 의뢰 “건수” 만 있으면 곧장 구속 연행으로 이어지고 광고기회를 봉쇄하기까지 한다. 간신히 서점에 배포된 책들도 언제 어떤 빌미로 압수, 수색될 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1 > 정권 교체기의 압수, 수색

— 87년 7월 월간조선의 조갑제기자가 정리한 [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는 정승화씨의 회고록을 인쇄용 필름 상태에서 압수.

— 87년 11월 [제5공화국 정치비사] — 중원문화에서 교정지 상태로 압수.

— 87년 11월 [제5공화국, 그 군부인맥] 2400부 압수.

사례 2 > 북한관계 서적에 대한 상식 이하의 탄압

일일이 사례를 들기 힘들 정도로 많으나 황석영씨의 예를 보자.

안기부는 89년 11월 창작과 비평사 주간 이시영씨를 국보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시켰다. 안기부에 따르면 [창작과 비평] 89년 6월호에 황석영씨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의 일부를 게재한 것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가, 이 원고의 게재와 관련한 전화연락 및 원고료 지급 등의 행위는 각각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었네]의 일부 원고는 이미 [신동아] 89년 6월, 7월호에 실렸던 것이다.

사례 3 > 안기부, 보안사 등의 보복 수사

— 88년 보안사의 요원들은 100여개의 서점에 영장없이 들이탁쳐 도서출판 소나무의 [보안사]라는 서적을 봉땅 압수해갔는 바 이 책은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보안사에 끌려가 간첩으로 조작되는 과정, 보안사 내부 요원이 되어 보고들은 보안사의 악폐를 수기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 89년 안기부는 도서출판 [힘]의 대표 김연인씨를 영장 없이 연행, 수사과정에서 안기부는 동출판사의 도서인 [의혹의 KAL기 폭파사건]을 문제삼아 집중수사했는데 “그 책의 원고를 건네준 간첩이름을 대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협박으로 일관하였다. 이 수사 이후 대표를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계속 팔려나가자 안기부는 보복적 조치로 편집부 직원, 경리까지 연행, 구속한 바 있다

대학 언론탄압과 국가보안법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

1. 들어가며

이 기초발제문에서는 대학언론탄압과 국가보안법의 상관성 및 대학언론 선진일꾼들의 실천적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정확한 논의 전개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원론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원론적인 분석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고자 한다. 글의 전개는 대학언론의 자기역할,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기조, 대학언론 탄압의 구체적 사례,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우리의 주체적 대응순으로 한다.

2. 본말

<대학언론의 자기역할>

대학언론은 명백하게 전체 구국운동과 혁명운동의 과제를 올바르게 실현하고자하는 목적지향성을 띤 선전선동매체라 할수 있다. 이 속에서 대학언론의 선전대상은 1백만 청년학도를 중심으로 교직원을 포함한 전 대학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대학언론이 제도언론과는 달리 독재정권의 외압을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시기별로 자기 한계는 존재했지만 항상 진보적인 사항을 전파하는 자기 운동성을 지녀왔다. 이는 반대급부적으로 정권에 의한 지속적인 탄압을 받

게 되는 원인이 되고있다.

그러나 정권의 탄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대학언론은 이를 자기사명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았고, 그로인해 정권의 탄압은 갈수록 노골화되어 나갔다. 때때로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 인해 대학언론의 선전활동이 위축되는 시기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전체 대학언론이 역사속에서 연관되는 시련의 일과정에 불과했다. 대학언론의 자기역할은 명백히 전체 구국운동, 혁명운동의 일주체인 학생운동속에서 올바른 관점의 선전활동을 하는데 있다. 이는 우리 운동의 과제가 풀릴때까지 끊임없이 강화발전될 것이다.

<대학언론 탄압 기조>

대학언론에 자행된 탄압은 89년 문교부가 발표한 대학신문 이원화 방침인 "5·6조치" 이후에 서서히 가시화되었다. 탄압의 양식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필진과 기자를 인신구속하는 것이 대다수이었다. 그러나 90년에 들어서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은 더욱 교묘하고 노골화 되었다.

단순한 인신구속의 형태이외에도 동시다발적인 불법연행, 학생회 간부와의 관계추궁, 학내문제로의 비화 등으로 다양화,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8월 말에 서울시경에서 발표한 대학언론 관련자 수사보고에도 나타났듯이 올 2~8월까지 1백1명의 대학언론인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그중 75명이 불법연행되거나 구속, 수배되는 탄압의 대량화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대학언론에 대한 일련의 탄압은 주로 문교부가 총대를 메고, 안기부나 대공전략연구소, 관할 경찰서가 배후조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탄압하는 양식은 크게 3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기사를 빌미로 필진이나 기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신구속하는 직접적인 탄압, 둘째로 학생과 학교와의 마찰을 유도하여 마치 학생과 학교와의 싸움인양 호도하는 간접적인 탄압, 세째로 89년 5·6조치와 같은 구조개편을 통한 탄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학언론에 대한 일련의 탄압은 대학언론의 기사 면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전체 혁명과 구국운동에 복무하는 대학언론에 대한 조직적 침탈과정이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교두보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올해 불법연행되었던 기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단적인 예로 세종대 학보사의 경우 편집장과 2명의 기자들이 연행되어 기사에 대한 조사보다는 총학생회와 학보사와의 조직적 연관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았고 조사받은 기사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기사게제 시기가 1이년이나 지났고 내용 또한 타 대학신문과 비교해 볼때에 너무나 평이한 논조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학언론탄압의 구체적 사례>

앞서 탄압기조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언론 탄압의 구체적 사례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여기에서는 3가지 유형별 탄압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유형이다. 이는 3가지 탄압의 유형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탄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정권에 의해 타살되었던 민족민주언론열사 고 이철규열사의 경우에도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지에게 재됐던 <미제침략 백년사>가 국가보안법에 걸려 수배중이다가 고문, 살해됐다. 올 7월에 대대적으로 자행된 교지중심의 탄압(경희대, 한성대, 시립대, 외대 등 교지편집장 구속)과 8월에 자행된 신문중심위협(외대, 연대, 동국대, 세종대 등 학보사 기자 불법연행)이 극명한 예이다. 최근에 밝혀진 예이지만 보안사가 운영했던 <현실문화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운동권의 이념을 전파하는 대학교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보안사의 수사범위가 대학언론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둘째, 학생기자와 학교외의 마찰을 유도하는 간접적 탄압의 유형이다. 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매체발간의 중단을 당했던 고대신문의 경우와 학생기자 중징계로 이어진 수원대학보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탄압은 정도의 차이일 따름이지 대다수 학교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세째, 구조적인 탄압의 유형이다. 이는 작년 문교부의 5·6조치가 그 예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학신문을 학생신문과 학교신문으로 이원화하며 탄압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재편을 피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탄압은 단기간에 보편화될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많은 학교에서 대학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89년 연세춘추와 90년 부산대 부대신문이 학교측으로부터 신문사 구조개편을 요구받았던 경험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학언론 탄압은 매우 보편화 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는 주로 인신구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만해도 15명내외의 대학언론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만 6명의 대학언론인이 국가보안법의 죽쇄에 뮤여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중인 대학언론인은 구속자의 3~4배 가량에 이른다.

국가보안법 상에서 대학언론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조항은 “찬양고무죄”(특히 7조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이다. 법 규정 자체의 애매모호함과 위헌성은 두말할 여지도 없지만 대학언론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할 경우 대학언론의 독자는 법 대로라

면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혐의자가 될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지난 4월에 발간된 한성대교지 <한성 9호>에 실린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국가보안법에 걸려 편집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웃지못할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 받은 기사의 대부분이 북한 관련기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압의 시기가 조국통일투쟁 전후(7월~9월)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대학언론에 자행되는 탄압이 대학언론에 국한된 탄압이 아닌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점과 해당 시기 정치정세와 크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7·20 선언”的 와중에서 20여개 대학언론에 대한 내사와 대학언론인의 연행이 자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89년 외대학보에 게재된 <한국전쟁, 미국은 그날을 계획하고 있었다>, 90년 외대 교지에 게재된 평축관련 사진, 세종대 학보에 게재된 <미리가본 95년>, 동대신문에 게재된 <신데탕트와 조국통일>, 외대학보에 게재된 <사회주의 철학논쟁과 북한사상>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의 주체적 대응>

사실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장기화되고 노골화 되는데 비해 우리 대학언론 선전일꾼들의 대응은 매우 미약했다. 이철규열사의 죽음 이후 서강대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결집하기도 했으나 그 외에 이렇다 할 대응 한번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직도 대학언론 단위를 충괄, 지도해 내는 투쟁의 구심체가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언론 선전일꾼들의 첫째가는 대응방안은 90년 각 단위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우리의 자주적인 조직 “서울지역 대학언론 협의회”的 건설을 통해 대학언론 탄압에 대한 조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언론 전반을 총괄, 지도해내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전체 조직건설투쟁과 더불어 각 단위의 주체를 편성하여 탄압양식,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탄압에 대한 일상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둘째, 탄압분쇄투쟁의 힘은 대학언론의 주인인 학우대중들로 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자기 매체의 대중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학언론과 학우대중들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사업을 각 학교별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세째, 이러한 자기 조직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민족민주운동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싸워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단지 대학언론에 고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임이 명백하기 때문이

다. 연대투쟁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조직적 과제를 대중 속에서 강화하는 것만이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실천적 투쟁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탄압사례

1) 대학신문 평점제

대학신문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2~4점은 주간교수 경고, 4~6점은 총학장 경고, 6~9점은 편집장 구속의 형벌을 내리는 <대학신문 평점제>는 대학언론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지난 4월 전국주간교수협의회 세미나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정권측이 대학신문에 대한 치밀한 평가 분석작업을 사전에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대학신문의 실상>이라는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각대학으로부터 점수 분석한 440개 신문 중에서 대학신문에 게재되기에 다소 편파적이고 어색하다고 생각되는 239개 항목의 글을 추출하여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학신문의 참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일부 과격학생들의 편향된 정치관과 시국관등을 대변하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글들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판정표를 보면 나대로 몇 가지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체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학신문 판정표>

인자 기술	단순인자 (1)	의식변화 (2)	행동변화 (3)	점수
비판적(이론지향) (1)	1	2	3	
부정적(가치지향) (2)	2	4	6	
파괴적(행동지향) (3)	3	6	9	

학보 발췌문	북한 원전 및 방송 평점	체제전복성향 9점
<p>오늘의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강점되어 있는 대소 전진기지이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잉여자본과 농산물의 경제침략기지이며, 문화적으로는 팝송없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식민지이다.</p> <p><XX학보 5월 4일></p>	<p>남조선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노태우괴뢰 도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의해 철저히 예속되어 있다.</p> <p><X월X일 평양방송></p>	<p>반미감정고취 8점</p>

* 이 판정표는 불법연행되었던 기자들의 진술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판정표의 진상은 기사가 문제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다 풀려나온 학생기자들에 확인된바 있다. 지난 8월2일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이진형 동대신문 사회1부장과 이상필 외대학보 전 편집장이 조사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판정표를 기준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증언했다.

2) 숙명여대 교지 28호의 경우

숙명여대 교지인 <숙명학보>28호는 방학중인 지난 7월, 게재되었던 논문을 문제삼아 편집장 김지수양이 불구속입건되는 탄압을 받았다.

논문의 내용은 특집-현대사, 짜인글2-학생운동 조직본의 글이었다.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편집장의 말에 의하면 교지에 실린 글의 기획의도와 필진조사등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며 특히 필진과 관련지위 조직을 들추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편집장은 연행되기 이전 교지가 인쇄되던 3월부터 관할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보아 법(?) 집행의 목적보다는 꼬투리를 잡아 편집실 간부들의 활동을 제약, 정치인 매체 발간사업을 방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괄발제

김 선수 변호사

1. 국가보안법의 기본 성격
2.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문제점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4.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 분석
5. 악법에 대한 구제수단

1. 국가보안법의 기본 성격

가.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민족분단을 고착화 시킨 반통일적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성불가침의 원리로

서 국민의 뇌리를 가득메우고 있는 반공이데올로기의 법제적 표현 이자 이를 유지, 확산하는 현실적 강제력의 지주였다. 한편 반공이데올로기는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유지의 방패로서 기능하였고,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유지의 목적을 위하여 지나치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하여 보다 높은 가치와 이념까지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 및 그 동조세력과 고류, 대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불법화하고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보법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내란단체일 뿐이고 따라서 토벌의 대상이요, 복속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보법은 민족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에의 길을 원천봉쇄하는 반통일적 법률이다. 그에 따라 민간 부문의 통일운동이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제 민족통일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국보법은 핵심적인 하나의 장해요소에 불과하다.

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상탄압법 및 기본권 억압체제로서 반민주적 법률이다.

어떤 사회가 기존의 질서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어서 더이상의 발전에 질곡이 될 때 이 모순을 극복하여

사회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도입, 혹은 창조해야만 하고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요체가 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국보법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나 공산계열의 활동 등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도 불법시하고 오로지 비판만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지평을 협소한 틀 속에 가두어 놓았다.

민주주의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법률로 탄압함으로써 발전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가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으로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보법은 출판, 학술 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등 예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국민의 사상적 수준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일체의 표현 행위조차 규제하고 있다.

또 국보법은 그 적용과정에서 언제나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과 조작 등 인권침해를 수반하였다.

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반민중적 법률이다.

민중은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계층이기에 이러한 억압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게 된다. 민중운동의 이러한 지향은 집권세력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집권세

력은 민중운동을 탄압하게 되는데 그 탄압의 대표적인 도구로 국보법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6공화국 이후에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에 국가보안법이 더욱 확대적용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민중운동은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 극복을 위해 반국가단체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 내에서 자주적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름지어 하여 국보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2.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문제점

가. 적용대상의 무한한 확대

애초에 국보법이 제정될 당시 국보법의 주된 적용 대상은 남로당의 지하세력과 북한이었다. 따라서 남한 내의 무장세력이 거의 완전하게 진압되고 내란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는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국보법은 더욱 확대되고 남용되어 남한 내의 정치세력에 대하여 정권적 차원에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러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에 대해 국보법이 적용된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형법 상의 간첩죄와 경합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보법의 별도의 존재의의는 상실되었다. 오히려 국보법의 주된 적용대상자는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국내세력이었다.

특히 5공화국에 이르러서 국보법은 사회 전역으로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6공화국 하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구속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사회운동, 학생 운동, 통일운동 나아가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생존권 투쟁의 영역에까지 국보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심지어 출판, 언론, 서점, 학술, 문학, 미술 등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 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사회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까지 국보법이 적용되어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나. 적용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무시

1)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이른바 대공전담기구라는 명분 아래 경찰,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산하에 수많은 비공개 밀실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남산에 있는 안기부와 각 지방의 안기부 분실, 홍제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 수사부, 시경 장안평 대공분실,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대공분실, 송파 대공분실, 각 경찰서 정보과 내지 대공과 등...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이 많은 밀실수사기관들이 저마다 막대한 시설

과 인력, 예산을 사용하면서 수사실적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 사이에 관할의 분담같은 것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국군보안사령부는 군형법위반사건이나 군법회의 관할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인데도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프락치를 강요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공사건 전담기구들은 독재권력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적법절차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우선 체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체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데도 대공수사 기관원들이 잠복 내지는 미행하여 강제로 불법연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불법구속상태에서 밀실수사를 한다.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으례 불법연행 후 48시간 동안 당연히 피의자를 감금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는 위 48시간초과 넘기고 불법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국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한다고 하는 대공수사 부서내에서는 잔인한 고문수사가 제도화, 조직화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대공수사기관의 밀실 속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물적 증거보

다는 피의자 상호간의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국보법의 적용은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또 대공수사기관들은 가족과의 면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절대 제한불가능한 변호인의 접견조차 금지하고 피의자를 바깥 사회와 완전히 차단한 채 밀실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자체를 조작하곤 하였다.

한편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보장기능과 수사지도기능을 가지나 적어도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관한한 위와같은 기능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비록 그 자신이 적극적인 물리적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해졌음이 명백한 고문의 혼적을 철저히 외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찰에서의 모든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의 내용을 반복시키기 위하여 심리적 강압·회유·협박을 일삼아 왔다.

오늘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오로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시국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여야 할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여 왔기 때문이다.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관한 한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법

정에서의 장기불법구속, 고문의 호소등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고문에 대한 통제임무를 유기하였다.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가. 반국가단체의 개념

1)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참칭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에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양 사칭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형식적인 사칭자체가 아니라 “결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하여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 입법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정부참칭이라는 개념은 가벌적·실질적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충분히 명시하지 못하여 위헌무효이다.

국가변란이란 개념없이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명확히 사회적 관념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형법상의 내란죄와관련하여 균형이 맞지않고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변란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변란후 새로운

정부수립의 구체적 구상을 필요로 하는가, 제도의 개혁이 아닌 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제기된다.

2) 한편 북한을 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모순적일 뿐만아니라 더이상 법적 규범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로 알려진 1948. 12. 12의 유엔총회 결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승인한 것이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부이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미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1970년에 평화적 경쟁제의,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 평화통일원칙의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남북한유엔동시가입제의, 1980년 총리회담제의, 1981년 7·7선언과 유엔총회연설 등 이런의 제의와 선언을 해왔는바, 이는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한 기조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와같은 정부의 외교정책 및 통일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되므로 더 이상 법적 규범력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우리 헌법전문과 제4조, 제66조 등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정책이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정책을 선언한 것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친압과 영토의 회복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규범인 헌법의 위 조합에 위배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명높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이다.

우선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 지니고 있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광범위함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름처럼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데 도대체 어떠한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름처럼 하는 행위인지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오로지 타월한 공안적 상상력을 가진 대공수사기관과 법원만이 독단적으로 이를 재판할 뿐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 위 조항은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고, 정치활동의 자유의 기본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이적목적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결사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사상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 마저 질식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구체적 징표를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이적목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민중운동단체 특히 1989년 이후에는 노동운동단체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1981. 9.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이후 1986.에 서울노동운동연합,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 엠엘당결성기도사건, 반제동맹당사건에, 1987에는 노동운동후원회사건, 정치신문발간위사건,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사건,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연맹사건, 성

남지역 민족해방노선 현장활동가그룹사건등이 있었고 6공이후 1989. 2.에 인천부천지역노동자회, 같은해 10.에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등에 적용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노동계급, 인천노동자대학,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안양민주노동자일동, 일꾼노동문제연구원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사회의 군사독재정치의 폐해와 급속한 산업화로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 제반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단체로 탄압을 받았다. 더구나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과 자신들의 주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고, 또 자신들의 활동이 북한을 이름처럼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름처럼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인정하여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또 이러한 조직사건은 노동운동을 좌경용공시하고 국민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기 위하여 조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조작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뒤따랐다. 또 매스컴에 엄청나게 확대왜곡보도하여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고는 실제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게되자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북부지역 노동자연맹조작사건 및 인천노동상담소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

다.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위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죄'는 정권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적표현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물 중에 어느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어느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전문적인 법률가조차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이적표현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며, 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공안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라도 이 조항으로 구속·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조항은 우리의 국민생활 전영역을 규제하고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질곡하고 있다. 모든 사상적 표현물, 학문·예술적 표현물에도 무차별 적용되어 국민의식수준, 문화수준의 발전조차 봉쇄하고 있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구성이 형법상의 내란죄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90조의 내란예비 내지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등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결사하는 것은 아니

나 반국가단체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목적수행죄

국가보안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항 제1호는 "형법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제1항 제2조는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증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가 북한을 형법상의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상간첩죄 이외에 따른 국가기밀 보호규정을 들 필요가 없고 폭발물사용에 대하여는 형법제119조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다. 한편 국가기밀의 개념이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며 나아가 판례에 의하여 엄청나게 확대해석되었다. 판례는 "북한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해당될 수 있으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내용의 것일지라도",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방면에 공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 하는” 모든 사실이 국가기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간첩죄의 유죄판결을 양산하여 왔다.

제3호, 4호, 5호는 형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분히 처벌 및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제6호는 “제1호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전·선동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린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나 어떠한 절박성이나 개연성이 요건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침해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후단은 1958년 개정시 신설된 인심혹란죄를 이어받은 것으로서 당시 언론조항이라하여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이다. 특히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란 형벌법의 구성 요건개념으로서 지나치게 애매하고 막연하여 백지형법적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허위사실의 유포”나 “사실의 왜곡”도 권력의 자의적 법적용에 이용될 소지가 많다.

라.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제4조 제1항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제5조2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점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처벌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주는상대방이 누구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상의 행위일 뿐이며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가별적 행위가 되려면 금품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아니라하는 관련된 규범적 관계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친족적 정의로 받는 경우나 거래상 대가관계로 받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벗어 처벌할 수 없다할 것이다.

마. 잠입·탈출죄

제6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래 2·4파동시 간첩이 기밀의 수집·탐지를 하지 않고 침투하여 국내에 잠복하거나 지하당을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암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의 운영은 반드시 단순하고도 공개적인 왕래행위등 지리적 이동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는 잠입과 탈출이라

는 어휘의 문리적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단순한 지리적 이동은 출입국관리라는 행정상의 관리대상의 문제에 불과한 왕래행위를 지나치게 형벌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6조 제2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경우를, 같은조 제3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지령’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 특질을 결여하고 있으며, ‘목적수행’이라는 개념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불법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지령과 협의 후 그에 따라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처벌의 가치조차 없다. 지령과 협의라는 것이 일정한 행동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그 행동을 처벌하면 충분한 것이다.

바. 찬양·고무

1)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름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2항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경우를,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를, 제4항은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경우를,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반공법 아래로 전승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꽃이라 할 수 있고 형벌법규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가장 철저하게 위배되어 있는 본보기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사상탄압법이고 반민주악법임과 동시에 민중운동탄압에 철저하게 복무한 조항이다.

2)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0. 4. 2. 소위 한정한헌 결정을 함으로써 실날같던 국가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의 폐지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위 찬양·고무죄는 첫째,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 무려 다섯군데의 용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둘째 위 조항을 문리 그대로 해석·운용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양심의 침해 가능성을 남기며,

셋째 문리 그대로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것 이 되면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 즉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선별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 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생겨나며,

넷째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의 부분과 헌법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에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조항의 위헌성을 설명한 후에 위조항의 그 다의성 때문에 위헌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전면위헌으로 완전폐기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보지 않으며 완전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백과 혼란도 문제지만, 남북간에 일찌기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여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완전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의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더 클 것이므로 위조항은 다

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정비되어야 할 불완전한 것일 뿐으로서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 결정을 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한정합헌결정은 법원 등 집행자가 결정이 밝히는 한정해석을 따라 위헌적 법적용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집행원을 갖고 있지 못하여 현행법상 아무런 지속력도 없어 단순한 합헌결정과 구별되지 아니한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한정합헌결정 후에 법원의 태도가 바뀐 바가 전혀 없다.

4. 평민당의 민주질서 보호법안

가. 제안이유

평민당은 1989. 12. 4자로 폐쇄사회적 골격의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개방사회, 민주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골격의 안보법규로 대체하는 법률안으로서 ‘민주화질서 보호법안’을 제안하였다.

평민당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유로서 첫째 국가보안

법은 정부의 개방정책과 경면충돌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미봉건 대책만을 강구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개방화의 차원'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민주국가의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과 포괄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합법적인 남용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타당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민주화'를 지향하는 한 그대로 존치시킬 수 없다.

셋째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이제 변화된 사회현실과 유리되어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안보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이 보완장치없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에는 첫째 '직접적으로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에 대처할 수 없고, 둘째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 만으로는 북한이나 결국 또는 적대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하여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허점이 생기므로 대체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평민당은 대체 입법 구성에 적용한 원칙으로서 첫째 형법의 규정을 보완한다는 원칙, 둘째 개방화의 원칙, 셋째 민주화의 원칙, 넷째 정치적 다양성의 수용원칙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체 입법이 이루어진 후의 새로운 안보형사법체계는 폭력적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과 다른 형사 특별법으로, 비폭력적 안보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남북교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나. 법률안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안 제2조 제4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에 준하는 집단'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체제를 구비한 집단"(안 제2조 제5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밀 탐지, 수집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 증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98조의 간첩죄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고(안 제3조 제1항), "그 이외의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을 위하여 위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법정형을 하향조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제2항).

그리고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안 제2조 제6항)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와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등 죄를 폐지하고 민주질서 위해의 죄를 신설한다. (안 제4조) 기본적 행위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1.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점을 알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여기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법치국가의 체계에 관한 헌법의 규정 중에서 "1.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의 권리 2. 입법권 국회에의 귀속과 법률의 헌법에의 기속 3. 행정 및 사법의 법률에의 기속 4. 의회제도에 따른 반대당의 형성과 그 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 5. 사법권의 독립" 등 다섯 가지의 원칙과 제도를 한

정하여 말하고(안 제2조 제2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 한다' 함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원칙과 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2조 제3항)

적대국가등의 지령을 받은 범죄 및 적대국가등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의 범죄에 대하여 형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 잡입탈출, 회합·통신 동남북 교류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와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특별형사소송규정 중 공소보류 규정을 존치하고, 참고인의 구인·유치규정과 구속기간 연장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다. 검토

1) 평민당이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에는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와 적국 또는 적대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이나 '준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러한 간첩을 방조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목적 그대로 그 법제 2조에 규정하는 군사정책, 군사전략등

'군사상의 기밀'에 관한 누설과 탐지·수지행위를 규제하고 있을 뿐 '군사기밀 이외의 국가기밀'에 대한 간첩행위의 규제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 제3조의 국가기밀 탐지·수집등의 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형법상 북한이 간첩죄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미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북한을 준적국으로 보아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남북통일과업에 비추어 보아 북한을 적국 또는 준적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은 당연하나, 대체입법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에 해당되게 되어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음으로 일반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 하나 과연 어느 정도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평민당의 제안 이유에 의하더라도 미국 서독 등은 모든 외국과 그 중개인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는 것인바, 따라서 일반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형법을 개정하여 형법의 '외환의 죄'에 관한 장에 이를 규정하면 족할 것이다.

2) 평민당의 대체 입법안의 핵심은 제4조의 민주질서위해의 죄

조항이고, 평민당을 바로 이 조항을 존치시키기 위하여 대체 입법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시대에 반공법이 남용되어 반공법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탄이 빗발치고 공산권과의 외교에 질곡으로 작용하자 이를 폐지하는 대신 그 핵심조항들을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존치시켜 국내의 민주적 세력을 탄압했듯이 5공화국과 6공화국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터무니없이 남용되어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되고 북한 및 공산권과의 교류에 질곡으로 작용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 조항을 존치시킴으로써 민중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현재 국가보안법 제7조의 규정으로 민중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데는 논리적인 억지가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이롭게 항목적이 필요한데 북한과 아무런 관계없이 남한내의 상황속에서 자주적으로 발전한 민중운동세력에 대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억지라 아니할수 없다. 그런데 이 민주질서 위해의 죄 조항은 이러한 억지논리도 해결해 준다.

평민당은 이 조항의 존치이유로 국가보안법이 보완장치없이 폐지되면 비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에 대처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비폭

력적인 국가전복'이 무엇이고 가능한 것인지 또 '비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이 무엇이고 이를 형벌로써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비폭력적 선전활동에 대하여 형벌로써 대처한다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요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폭력적 선전활동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응양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공개적인 토론과 표현을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보다 성숙된 대응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법적용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모든 민중운동 세력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높후하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법원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민중운동세력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민중혁명이나 노동해방을 주장하면 거의 예외없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는 것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중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평민당의 대체입법안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용의 여지만을 온존시킨다고 할 것이다.

5. 악법에 대한 구제수단

어떠한 법이 악법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법질서 내에서 바련된 이론은 합법적 폐지운동, 시민 불복종, 저항권과 혁명권이 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법질서 아래서 무엇이 정당한 법이고 무엇이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그법의 목적과 제정절차 그리고 적용과정이 민주적 법원칙에 합치하느냐가 된다. 제정목적의 정당성이란 입법목적이 국민적 정의감과 도덕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 그룹의 이해와 편의에 봉사하기 위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적용과정에서의 정당성이란 대의민주주의원칙이 요구하는 바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된 방법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 의해 청문회 등 정규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적용과정의 정당성이란 입법목적대로 남용되지 않고 적법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악법에 해당됨에 의문의 여지없다.

합법적 폐지운동은

악법에 대한 일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악법에 대한 제도적 구제는 입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다. 입법적 구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한 개정을 통해 악법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법적 구제는 사법부나 별개의 국가기관이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민불복종은

도덕적 원칙에 반하는 법의 준수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이 경우 불복종행위는 반대하는 법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고 반대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경우의 시민불복종은 무고한 제3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피해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적 요소도 최소한에 그친다. 시민불복종행위는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단식, 시위, 항의, 법정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불복종이 전개되어 왔다.

악법구제를 위한 최후의 초법적 수단으로서 저항권과 혁명권이 인정되고 있다.

저항권과 혁명권의 관계에 대하여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저항권은 현행법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긴급권

인데 반해 혁명권은 기존법제를 파괴하는 행위 대해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사는 정규의 입헌절차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의 실현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제도가 있고 이러한 사람이나 제도가 나름대로의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때는 이를 헌법질서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필연적으로 초법적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어떤 학자는 만약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법적인 폐지와 시민불복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저항권과 혁명권이라는 국민의 비상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참고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보고서」 87, 88. 제3집 역사비평사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보고서」 '89 제4집 역사비평사

남궁호경 "국가보안법의 해석론적 고찰" 대한변호사 협회지 「인권과 정의」 88. 9호

홍성후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와 기본적인권의 침해" 대한변호

샤 협회지 「인권과 정의」 88. 9호.

국순옥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그 이후의 문제들” 대한변호사협

회지 「인권과 정의」 88. 9호.

안경환 “악법구제와 국가보안법 개폐” 「현실과 대안」 89. 10호.

김성남 “국회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공청회 의견서” 「인권과 정의」.

헌법재판소 89헌가 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험심판 결정

헌법재판소 90헌가 1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험심판 결정

평민당 “민주질서 보호법안”

민변, 민교협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위한 공 청회(89. 2. 20) 자료집.

장명국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준비모임 “동지여, 새벽 이 오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공청회(90. 7. 21) 자료집”

남궁호경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 「법과 사회」 창간호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편

김창록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국가보안법”